

# 「부부생활비통장(Joint Account)」 상품설명서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우리부부통장(Joint Account) 특약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## 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 : 「부부생활비통장(Joint Account)」
- 상품특징 : 부부가 공동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통장으로 공동예금주 각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
## 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.

구분	내용
가입대상	☐ 실명의 개인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입
예금의 종류	☐ 저축예금
이자율 적용	☐ 예금보유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 (연 0.1%, 2014년 9월 20일 현재)
세제혜택	☐ 가입자 본인의 한도 내에서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 가능
예금의 신규 및 해지	☐ 은행 영업점 창구(이하 "창구"라 합니다)에서 가입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동예금주 전원의 서명 또는 거래인감의 날인으로 신규 및 해지할 수 있음. 단, 예금주 중 한 사람에 의해 이 예금을 신규 또는 해지를 하는 경우, 신규 또는 해지를 위임한 예금주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가능) 및 실명확인증표로 거래가 가능. 이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규 또는 해지를 위임한 예금주 본인 발급분에 한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는 공동예금(Joint Account) 가입 또는 해지용에 한함
예금의 지급	☐ 공동예금주 중 어느 한 사람의 청구에 의해 일부 또는 전액 지급 가능
제신고·재발급	① 이 통장과 연결된 공동예금주 각자의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관련 제신고와 재발급의 경우 공동예금주 각자의 서명 또는 거래인감의 날인으로 거래가 가능 ② 통장, 인감 등의 분실, 도난, 그 밖의 사고 및 MS(Magnetic Stripe) 훼손으로 인한 제신고의 접수는 공동예금주 전원 또는 한 사람에 의해 가능하며, 재발급(인감·비밀번호 변경 포함. 이하 같음)의 경우 예금주 전원의 서명 또는 거래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. 다만, 이 통장의 예금주 중 한 사람에 의한 재발급은 제신고·재발급을 위임한 예금주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(인감 변경 외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가능) 및 실명확인증표로 가능. 이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제신고·재발급을 위임한 예금주 본인 발급분에 한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는 공동예금(Joint Account) 제신고·재발급용에 한함.

구 분	내 용									
제신고의 철회	<p>☐ 제신고를 철회할 때에는 계좌개설점이나 사고신고 한 다른 영업점에서 공동예금주 전원이 서명 또는 인감날인하여야 함. 다만, 이 통장의 예금주 중 한 사람에게 의한 사고신고 철회는 철회를 위임한 예금주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가능) 및 실명확인증표로 가능. 이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고신고 철회를 위임한 예금주 본인 발급분에 한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는 공동예금(Joint Account) 사고신고 철회용에 한함.</p>									
지급정지	<p>☐ 공동예금주 중 한 사람에게 의해서도 입금금지 또는 지급금지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인 이외의 공동명의 예금주는 은행에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 이 경우 예금은 전액 입금 또는 지급이 금지되고, 입금금지 또는 지급금지 해제는 입금금지 또는 지급금지 신청을 요청한 예금주에 의해서만 가능.</p>									
계좌한도	<p>☐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월 최대 1천만원까지 입금이 가능</p>									
지분을 적용	<p>☐ 공동예금주간 균분(50:50) 지분율을 적용하며 상계, 압류, 공동예금주의 사망, 이자소득의 귀속, 잔액증명서의 발급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상계 : 공동예금주 중 한 사람이 은행에 채무가 있고 상계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계 당시 통장의 잔액을 예금주별로 균분하여 상계처리</li> <li>2. 압류 : 공동예금주 중 한 사람에게 대하여 압류(가압류)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압류 당시 통장 잔액에 대한 압류(가압류) 예금주의 지분을 압류</li> <li>3. 공동예금주의 사망 : 공동예금주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은행에 신고된 경우 입금과 지급이 제한되며, 사망한 예금주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적 상속절차에 따라 처리</li> <li>4. 이자소득의 귀속 : 이자소득은 균분지분율이 적용되어 예금주별 소득으로 국세청에 통보됨</li> <li>5. 잔액증명서의 발급 : 이 통장의 잔액에 대해 예금주별 균분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잔액증명서가 발급됨.</li> </ol>									
카드	<p>☐ 공동예금주 각자 명의의 현금카드 또는 우리카드사의 체크카드, 신용카드를 연결 가능</p>									
전자금융	<p>☐ 공동예금주 각자의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으로 조회 및 이체가 가능</p>									
수수료면제	<p>☐ 전월에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수수료면제 혜택이 제공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68 1570 1458 2040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368 1570 647 1644">우대 조건</th> <th data-bbox="647 1570 1227 1644">면제대상 수수료</th> <th data-bbox="1227 1570 1458 1644">면제 횟수<sup>주1)</sup>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368 1644 647 1760">- 급여이체<sup>주2)</sup> - 우리카드사의 체크/신용카드</td> <td data-bbox="647 1644 1227 1760">가. 다른은행 CD/ATM현금출금수수료 (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공)<sup>주3)</sup></td> <td data-bbox="1227 1644 1458 1760">매월 총 5회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68 1760 647 2040">결제 - 공과금/관리비 이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</td> <td data-bbox="647 1760 1227 2040">나. 당행자동화기기 영업시간외 현금출금수수료 다.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타행이체 수수료 라. 전자금융수수료(인터넷, 모바일 뱅킹 의 타행이체 수수료)</td> <td data-bbox="1227 1760 1458 2040">매월 총 10회 (나~라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1) 수수료 면제 횟수는 통장기준으로 부부합산 매월 총 15회 제공됩니다.</p>	우대 조건	면제대상 수수료	면제 횟수 <sup>주1)</sup>	- 급여이체 <sup>주2)</sup> - 우리카드사의 체크/신용카드	가. 다른은행 CD/ATM현금출금수수료 (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공) <sup>주3)</sup>	매월 총 5회	결제 - 공과금/관리비 이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	나. 당행자동화기기 영업시간외 현금출금수수료 다.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타행이체 수수료 라. 전자금융수수료(인터넷, 모바일 뱅킹 의 타행이체 수수료)	매월 총 10회 (나~라)
우대 조건	면제대상 수수료	면제 횟수 <sup>주1)</sup>								
- 급여이체 <sup>주2)</sup> - 우리카드사의 체크/신용카드	가. 다른은행 CD/ATM현금출금수수료 (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공) <sup>주3)</sup>	매월 총 5회								
결제 - 공과금/관리비 이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	나. 당행자동화기기 영업시간외 현금출금수수료 다.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타행이체 수수료 라. 전자금융수수료(인터넷, 모바일 뱅킹 의 타행이체 수수료)	매월 총 10회 (나~라)								

수수료면제	<p>주2) 급여이체 실적요건은 아래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(급여이체 실적요건 적용은 부부 각자의 직장 중 어느 하나에서만 급여이체가 되어도 가능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고객이 지정한 이체일 기준으로 이 통장에 50만원 이상 입금한 경우 (지정한 이체일에 입금되어야 인정되며 지정한 이체일이 휴일인 경우 전/후 영업일에 입금된 경우에도 포함하여 이체 여부를 확인)</li> <li>2. 적요란의 문구 중 "급여", "월급", "급료", "수당" 등이 인쇄된 이체실적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</li> <li>3. 적요란의 문구가 고객기본정보의 직장명과 동일하게 인쇄된 이체실적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</li> </ol> <p>주3) <u>다른은행의 범위는 시중은행, 특수은행, 지방은행, 우체국, 농협, 수협, 상호저축은행, 새마을 금고 등 CD공동망을 참여하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. 단, 편의점, 대형마트, 지하철역 등 은행 외부에 설치된 다른은행 제휴 CD기 및 VAN사 CD기에서 출금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</u></p>		
예금자보호여부	<table border="1"> <tr> <td data-bbox="347 947 560 1120">해당</td> <td data-bbox="560 947 1495 1120">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td> </tr> </table>	해당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해당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		

### 3 | 이자지급 방식

- 이 통장은 예금 보유일 현재 영업점에 고시된 이율이 적용됩니다.
- 이자는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셋째 토요일(원가일)에 원금에 더합니다.
- 이자계산은 최초 예금일(또는 지난 원가일)로 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고시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합니다.
- 이 통장의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이율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이율이 적용됩니다.
- 적용 이율 변경 시 그 변경 내용을 영업점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
### 4 | 유의 사항

- 이 통장은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달 16일부터 우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공되는 이율 및 수수료면제 서비스 적용이 중단.(다시 이 통장으로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16일부터 우대적용 재개됨).

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우리은행 고객센터(1588-5000),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wooribank.com)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